

시험 방역관리 안내(7판) 개정전후대비표

〈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〉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(공통)	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삭제, 기타 관련 사항 현행화		
목차	II.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1. 주최기관 사전 준비 2. 시험 당일 조치사항 3.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4. 면접시험 조치사항 III.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1. 특별한 상황 2.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3.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 4. 격리자등의 이동 시 방역 조치	II.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1. 사전 준비 2. 시험 당일 3. 시험 종료 후 4. 면접시험 5.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	• 목차 구성 변경 및 확진자 시험 응시 관련 내용 통·폐합
	▷ 붙임 ◁ ... 5.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6. 법적근거 주요 내용 7.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 외출 시 주의사항 8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(예시) 9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) 10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1) 11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2) 12.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주요 질의 응답(FAQ)	▷ 붙임 ◁ ... 5~12. (삭제)	•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승인 절차, 격리 위반 시 벌칙 등 관련 내용 삭제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I. 개요			
1	<p>2. 기본방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의 성격, 대상자,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- 본 지침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자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 가능 - 또한 시험 주최기관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○ (기본조치) 시험 주최기관은 수험자의 시험 관리 시 필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, 조기인지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 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 (사전준비, 시험당일, 시험종료 후), 장소별 방역사항 관리 및 관리체계 구성 ○ (특별조치) 격리대상(확진자 포함)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,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더불어 특별 조치사항(외출 허용, 격리자등 시험장 방역, 이동)을 추가하여 운영 	<p>2. 기본방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, 시험의 성격, 대상자,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○ 시험 주최기관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수험자의 시험 관리 시 필요한 방역계획 및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 마련하여 적용 가능 - 시험 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(사전 준비, 시험 당일, 시험 종료 후 등), 장소별 방역사항 관리 및 관리체계 구성 ○ 수험자 중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,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사항과 더불어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을 추가하여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단 구성 변경(내용 명료화) • '격리자등 시험장 방역'을 확진자 '별도 시험실 방역'으로 변경 •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격리 및 외출 허용 관련사항 삭제
II.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			
구성	<p>1. 주최기관 사전 준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·홍보(붙임1~4)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위생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 및 물품 확보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지사항 안내 	<p>1. 사전 준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<input type="checkbox"/> (삭제) * 위치 이동 및 제목 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(삭제) * '2. 시험 당일'로 위치 이동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 및 물품 확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안내사항 사전 고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증상자 관리대책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단 구성 변경(위치 조정, 제목 변경)으로 내용 명료화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2	<p>○ (협조체계 구성)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(사도, 보건소 및 의료기관)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</p> <p>- 수험자 중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* 구축</p> <p>* 시험 주최기관→시·도→관할 보건소→소방서→의료기관(인근 선별진료소, 이송병원)</p> <p>◆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특성 (자료출처: '코로나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' 제13-2판)</p> <p>○ 증상 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</p> <p>○ 전파경로 :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(비말)에 의한 전파</p> <p>-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,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, 재채기, 말하기,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(비말)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(주로 2m 이내)하여 발생</p> <p>-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,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</p> <p>① (표면접촉)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(악수 등) 또는 매개체(오염된 물품이나 표면을 만진 후, 손을 씻기 전 눈, 코,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</p> <p>② (에어로졸 생성 시술) 기관지 내시경 검사, 객담 유도, 기관삽관, 심폐소생술, 개방된 객담 흡입, 흡입기 등</p> <p>③ (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)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, 커피숍, 주점,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</p>	<p>○ (협조체계 구성) 필요 시,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(사도, 보건소 및 의료기관)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</p> <p>- 수험자 중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연락처 확보</p> <p>* 시험 주최기관→시험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→의료기관(필요 시)</p> <p>◆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특성</p> <p>○ 증상 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</p> <p>○ 전파경로 :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(비말)에 의한 전파</p> <p>-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,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, 재채기, 말하기,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(비말)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(주로 2m 이내)하여 발생</p> <p>-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,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,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</p> <p>① (표면접촉)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(악수 등) 또는 매개체(오염된 물품이나 표면을 만진 후, 손을 씻기 전 눈, 코,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</p> <p>② (에어로졸 생성 시술) 기관지 내시경 검사, 객담 유도, 기관삽관, 심폐소생술, 개방된 객담 흡입, 흡입기 등</p> <p>③ (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)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, 커피숍, 주점,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, 기존 병상 배정 등을 위해 구축했던 협조체계를 필요 시 유관기관 연락처 확보로 변경
3	<p>□ 시설 및 물품 확보</p> <p>(추가)</p> <p>○ (관리 대기실) 유증상자(의심환자 포함) 발생 시,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격리공간* 확보</p> <p>*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</p> <p>○ (별도 시험실) 유증상자의 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경우,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</p>	<p>□ 시설 및 물품 확보</p> <p>○ 시험실 구성</p> <p>- (수험자 간격) 시험실 내 수험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</p> <p>* 책상 배치 간격 유지, 좌석 한칸 비우기, 칸막이 활용 등 수험자간 거리두기 방안 시험실 특성에 맞게 적용</p> <p>- (관리 대기실) 유증상자(의심환자 포함) 발생 시,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공간* 확보</p> <p>* 문을 닫을 수 있으면서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,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</p> <p>- (유증상자 시험실) 시험 당일 유증상자 확인 시 분리를 위해,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</p> <p>- (확진자 시험실) '5.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' 참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단 구성 변경(위치 조정, 제목 변경)으로 내용 명료화 • 시험실 구성에 관한 내용 통합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															
	<p>○ (방역물품) 체온계, 마스크*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*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</p> <p>○ (위생물품)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(비수동식 수도꼭지 등)에 손 세정제(액체비누),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 - 기침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, 종이타월(휴지 등)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</p>	<p>○ 방역·위생물품 확보</p> <p>- (방역물품) 체온계, 마스크*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* 감독관 등 시험 운영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</p> <p>- (위생물품) ①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(비수동식 수도꼭지 등)에 손 세정제(액체비누),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, ②기침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, 종이타월(휴지 등)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</p> <p><시험실별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및 개인보호구 예시(참고)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72 632 1682 1010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시험 운영자</th> <th>수험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 시험실</td> <td colspan="2">마스크(착용 권고)</td> </tr> <tr> <td>관리 대기실</td> <td>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</td> <td>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</td> </tr> <tr> <td>유증상자 시험실</td> <td>* 필요시 개인보호구: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, 일회용 장갑, 안면보호구(또는 고글)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</td> <td>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</td> </tr> <tr> <td>확진자 시험실</td> <td>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(강력히 권고), 일회용 장갑 * 필요시 개인보호구: 안면보호구(또는 고글) 및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</td> <td>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(강력히 권고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' 및 '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' 참고</p>	구분	시험 운영자	수험자	일반 시험실	마스크(착용 권고)		관리 대기실	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	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	유증상자 시험실	* 필요시 개인보호구: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, 일회용 장갑, 안면보호구(또는 고글)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	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	확진자 시험실	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(강력히 권고), 일회용 장갑 * 필요시 개인보호구: 안면보호구(또는 고글) 및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	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(강력히 권고)	<p>• 시험실별 착용 권고 또는 필요 시 사용 가능한 방역물품 예시 요약</p>
구분	시험 운영자	수험자																
일반 시험실	마스크(착용 권고)																	
관리 대기실	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	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																
유증상자 시험실	* 필요시 개인보호구: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, 일회용 장갑, 안면보호구(또는 고글)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	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(강력히 권고)																
확진자 시험실	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(강력히 권고), 일회용 장갑 * 필요시 개인보호구: 안면보호구(또는 고글) 및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	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(강력히 권고)																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4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지사항 안내</p> <p>○ ..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></p> <p>(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철저한 손위생 안내 - 환자,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※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-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<p>(수험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</div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안내사항 사전 고지</p> <p>○ ..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></p> <p>(시험 운영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철저한 손위생 안내 - 수험자가 아닌 환자, 유증상자는 시험장 출입 자제 안내 <p>(수험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험자 중 확진자,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하며, 유증상자는 시험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 안내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, 격리대상자의 시험장 출입금지를 환자, 유증상자의 시험장 출입 자제 안내로 변경 •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, 시험 당일 유증상자 응시 제한 조치 삭제, 별도 시험실 이용 및 시험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 안내로 변경
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·홍보(붙임1~4)</p> <p>○ 수험자,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</p> <p>○ 시험 관리자 등 관련자 대상 코로나19 특성, 손씻기,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및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* 수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감염관리총괄, 감염관리책임자, 운영요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 책임감 부여 및 사전 교육 철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증상자 관리대책 수립</p> <p>○ 수험자, 시험 운영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</p> <p>○ 시험 운영자 대상 코로나19 특성, 손씻기,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및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* 수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감염관리총괄, 감염관리책임자, 운영요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 책임감 부여 및 사전 교육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어 명료화
구성	<p>2. 시험 당일 조치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장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실</p>	<p>2. 시험 당일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장 출입관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위생 관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단 구성 변경(위치 조정, 제목 변경)으로 내용 명료화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5	<p>□ 시험장</p> <p>○ (출입관리) 관계자 외 출입 통제하고 손소독 및 필요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장</p> <p>- (운영요원)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, 외부인 출입 통제,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* 배치</p> <p>* 유증상자 관리 담당으로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, 필요시 개인보호구(마스크(KF94등급이상), 일회용 장갑, 인면보호구(또는 고글)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) 착용</p> <p>○ (유증상자 관리) 증상발생 수험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</p> <p>- (관리 대기실) 출입 관리 또는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대기실로 이동하여 체온 측정(고막체온계 등)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</p> <p>- (별도 시험실) 발열(37.5°C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*에서 시험 응시</p> <p>*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(시험 진행요원은 개인 보호구 착용)을 별도로 배치하여 유증상자 시험 누락 방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추가)</p>	<p>□ 시험장 출입관리</p> <p>○ (입실) 손소독 및 필요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입장</p> <p>- (시험 운영자)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,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* 배치</p> <p>* 유증상자 관리 담당자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, 필요시 개인보호구(마스크(KF94등급이상), 일회용 장갑, 인면보호구(또는 고글)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(비닐가운 포함)) 착용 가능</p> <p>- (유증상자 관리) 증상발생 수험자 확인 시 별도 장소로 분리</p> <p>① (관리 대기실) 출입 관리 또는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대기실로 이동하여 체온 측정(고막체온계 등)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</p> <p>② (별도 시험실) 발열(37.5°C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유증상자 시험실*에서 시험 응시</p> <p>*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(시험 진행요원은 개인 보호구 착용 권고)을 별도로 배치하여 인내</p> <p>○ (퇴실) 시험을 종료한 수험자 또는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 순차적 조정 등 퇴실 시 수험자가 몰리지 않도록 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단 구성 변경(위치 조정, 제목 변경)으로 내용 명료화 • 관계자 외 출입 통제 내용 삭제(시험 주최기관 방침에 따름) • 문단 구성 변경(위치 조정, 제목 변경)으로 내용 명료화 • 시험 당일 유증상자 응시 제한 관련 내용 삭제 • 퇴실 시 조치사항 위치 이동
5~6	<p>□ 환경 위생 관리</p> <p>...</p> <p>○ (환기)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, 상시 개방이 어려운(기상 상황 등) 경우 매 휴식시간 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(자연 환기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) 실시</p> <p>*시험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시험 종료 후(1회 환기 시 10분 이상)에 환기</p>	<p>□ 환경 위생 관리</p> <p>...</p> <p>○ (환기) 시험장은 하루에 3회 이상(회당 10분 이상) 주기적 환기</p> <p>-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, 상시 개방이 어려운(기상 상황 등) 경우 매 휴식시간 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(자연 환기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) 실시</p> <p>*시험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시험 종료 후(1회 환기 시 10분 이상)에 환기</p> <p>- 화장실은 상시 외부 환기 유지</p> <p>-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, 바람 세기 및 필터는 기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(‘붙임’ 참고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침 내 환기 관련 내용 통합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	<p>□ 시험장</p> <p>...</p> <p>○ (유증상자 관리)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관리 대기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</p> <p>-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의사가 있는 수험자의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</p> <p>- 감염관리책임자(감독관)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확진자 발생 시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</p>	<p>□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</p> <p>○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관리 대기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</p> <p>-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의사가 있는 수험자의 경우 유증상자 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</p> <p>- 유증상자 중 확진자 발생 시, 감염관리책임자(감독관)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2주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</p> <p>* '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' 참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부분 내용 기술 명료화 및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 추가* * 관련 지침: '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'
	<p>3.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</p> <p>○ (퇴실) 시험을 종료한 수험자 또는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 순차적 조정 등 퇴실 시 수험자가 몰리지 않도록 조치</p> <p>○ (증상 관찰) 시험에 참여한 시험감독관, 운영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을 자율 모니터링</p> <p>- 채점요원은 채점 작업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 자율 모니터링, 증상 관찰</p>	<p>3. 시험 종료 후</p> <p>○ (삭제) * '1. 사전 준비로 위치 이동</p> <p>○ (삭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단 구성 변경(위치 조정, 제목 변경)으로 내용 명료화 방역 지침 현행화(감염취약시설 외 접촉자 별도 관리사항 없음) * 관련 지침: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자차체용)'
7	<p>4. 면접시험 조치사항</p> <p>○ 면접시험은 가급적 비대면 시험(화상 면접 등)을 권고</p> <p>○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</p> <p>- (대기실) 대기장소의 수험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(좌우일뒀)를 권장</p> <p>- (면접실) 시험실(면접실)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험자와 면접관 간 비밀 감염 가능성 차단, 면접실 내 환기는 1일 최소 3회,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 실시</p> <p>※ 언어 또는 청각 장애 등으로 화상 면접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면면접 시행</p>	<p>4. 면접시험</p> <p>○ (삭제)</p> <p>○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</p> <p>- (대기실) 대기장소의 수험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(좌우일뒀) 권장</p> <p>- (면접실) 비밀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수험자와 면접관 간 거리 확보(최소 1m 이상)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, 면접실 내 환기는 1일 최소 3회,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 실시('붙임4' 참고)</p> <p>※ (삭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목 변경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, 대면 면접 제한 관련 내용 삭제 내용 명료화 및 칸막이 사용 관련 내용 삭제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8	(추가)	<p>5.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 ※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준수와 더불어 추가 조치 필요</p> <p>□ 사전 준비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확진자 확인)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수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험일이 격리 권고 기간에 포함 시, 수험자가 시험 주최기관에 연락 (유선 등) ○ (시험장 구성) 확진자 시험 응시를 위한 별도 시험장 또는 시험실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동선 분리) 확진자, 일반수험자가 겹치지 않도록 동선분리(시간, 장소 분리 등)가 가능하여야 하고, 별도 화장실 확보 - (수험자 간격 유지) 자리 배치 시 가급적 앞·뒤·좌·우 간격 2m 이상 (최소 1m 이상) 확보 ○ (물품 확보) 시험관리에 필요한 방역물품*, 개인보호구** 및 필요시 비상 상황 대비 시험장 밖 구급차 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체온계, 손소독제, 소독타슈, 소독제, 필요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등 ** 마스크(KF94 동급이상), 일회용 장갑, 필요시 안면보호구(또는 고글),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 (비닐기운 포함) ○ (사전 안내) 방역수칙 준수 및 협조 요청사항 사전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식사) 시험 중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, 도사탁 및 개인 음용수 준비 권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시험실 내 수험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며, 식사 시 대화 자제,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안내(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) **식사 후 화장실(양치 등 개인위생)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<p>□ 시험 당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마스크 착용) 관계자 및 수험자는 KF94동급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적극 권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험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상시 착용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‘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’ 내용 전체를 ‘5.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 관리 방안’으로 통합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		<p>- 시험 운영 관계자*는 시험장 입장부터 밖으로 퇴장 시 까지 착용 권고 *시험 운영관리 중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</p> <p>○ (시험지 배부) 수험자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자에게 직접 배부 *개인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식사, 화장실 이용, 마스크 만지는 것 등 금지, 탈의 후 손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코입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</p> <p>□ 시험 종료 후</p> <p>○ (시험지 수거) 수험자간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, 시험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화송용 비닐봉투에 담은 후 소독티슈*로 닦고 건조 후 화송용 상자에 포장(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) *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만 가능</p> <p>○ (시험지 관리) 수험자가 응시한 문제(답안)지는 별도 비닐봉투에 넣어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상자에 포장(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)하여 시험지규로 이송</p> <p>- 시험지(답안지)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손소독제로(70% 에탄올) 손위생을 실시하고, 답안지는 가급적 24시간 보관 후 채점</p> <p>○ (폐기) 시험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별도 지침*에 따라 처리 *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', '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' 등</p>	
구성	<p>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</p> <p>1. 특별한 상황</p> <p>2.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</p> <p>3.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(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외 추가 필요 사항)</p>	(삭제)	

쪽	현행(6-1판)	7판 개정	개정사유
붙임			
붙임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예방을 위한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문</p> <p>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0000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</p> <p>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예방을 위한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문</p> <p>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시험 응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, 시험장 출입 전면통제 내용 삭제
	<p>1. 수험자 협조 사항</p> <p>...</p>	<p>1. 수험자 협조 사항</p> <p>...</p> <p>-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,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자등*의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접촉자 마스크 착용 강조 *감염취약시설 접촉자 포함
	<p>○ 모든 수험자는 시험 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(체온측정 등)에 협조바랍니다.</p> <p>-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은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	<p>○ 모든 수험자는 시험 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(체온측정 등)에 협조바랍니다.</p> <p>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은 별도 시험실 응시 등 시험 주최기관의 안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유증상자 응시 제한 내용 삭제
붙임5	붙임 5.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	(삭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 지침(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’ 정의에 따름
붙임6 ~ 붙임12	<p>붙임 6. 법적근거 주요 내용</p> <p>붙임 7.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 외출 시 주의사항</p> <p>붙임 8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(예시)</p> <p>붙임 9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)</p> <p>붙임 10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1)</p> <p>붙임 11.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2)</p> <p>붙임 12.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주요 질의 응답(FAQ)</p> <p>- 외출 허용 관련</p>	(삭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, 외출 허용 승인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관련 내용 삭제